21. 학교 소속 조리사에서 발생한 방광암

성별	여성	나이	만 59세	직종	학교 소속 조리사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 요

근로자 ○○○은 2004년 4월 □학교에서 약 16년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020년 5월 혈뇨가 보이기 시작했으며, 2020년 11월 38.4℃의 발열로 동네의원에서 시행한 복부 초음 파검사에서 방광에 혹이 있다는 소견으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다. 이에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2020년 11월 경요도적 방광 종양 절제술(transurethral resection of bladder tumor)하였고 조직검사결과 만 59세가 되던 2020년 12월 방광암을 진단받았으며 이후 항암치료중이다. 근로자는 2004년 4월 □학교에서 조리업무와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판크리너와 오븐크리너 등 다양한 세척제로 인하여 상기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7월 5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 ○○○은 2004년 4월 7일부터 2011년 8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속으로 □학교에서 석식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으로 변경되면서 □학교 소속으로 2011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중식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 당시 근로자는 약 20명이었으며, 그 중 중식 조리원은 14명, 석식 조리원은 6명 정도였다. 근로자는 석식 조리원으로 평일 11시부터 19시 30분까지 근무하였다. 2011년 9월부터 □학교 소속으로 중식조리원이 되면서 근무시간은 8시부터 17시까지 정규 근무시간이었으며 근로자 수는 약 10명이었다. 이 중 3~4명은 19시까지 연장근무(석식조리)를 하였고, 근로자는 한 달에 15일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 ○○○은 2020년 5월 혈뇨가 보이기 시작했으며, 2020년 11월 38.4℃의 발열로 동네의원에서 시행한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방광에 혹이 있다는 소견으로 상급병원 진료 권유받았다. 이에 A대학병원을 경유하여 B대학병원에 내원하여 2020년 11월 경요도적 방광종양 절제술(transurethral resection of bladder tumor)하였고 조직검사결과 만 59세가 되던 2020년 12월 방광암을 진단받았다. 2021년 1월 재수술하였고 이후 항암치료 하였으나 궤양성 대장염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근로자는 과거흡연자이지만 고등학생 때 3년 이내로 하루에 1-2개비 정도 흡연하였으며, 금연한 지 40년가량 경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술은 1달에 한 번 정도 소주 1-2잔을 마셨다. 근로자는 고지혈증과 협심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방광암 등 암 관련 가족력은 없었고 요로 감염을 앓은 적은 없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여, 1961년생)는 만 59세가 되던 2020년 방광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2004년 4월부터 □학교에서 16년 동안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된 직업적 요인으로 입자상물질(PM), 다핵방향족탄화 수소(PAHs)가 제시되고 있다. 근로자는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조리업무와 청소업무 중 조리흄에 포함된 입자상물질(PM)과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노출 가능성이 있으나 노출수준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검토 결과 이들 물질과 근로자의 방광암 발생의 역학적 증거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자의 방광암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한다. 끝.